

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7. 4. 22.

나. 제 안 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7. 4. 22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

- 제53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총무위원회 제6차회의(97. 5. 6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및 주요골자

(제안설명자 : 총무국장 김동연)

가. 개정이유

- 시·구 감사기능의 일원화를 위하여 구청의 감사계를 폐지하고 감사담당관실에 2계 신설과 음식물쓰레기처리 등 업무량의 증가로 청소과에 1계를 각각 신설하고자 96. 12. 26일 도에 기구·정원을 승인 신청하여
- 경기도 자치 12200-1003(97.4.11.)호로 기구정원이 승인되어 구청장에게 위임된 동에 대한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업무를 시로 회수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

나. 주요골자

- 구청장의 감사관련 업무 일부 회수(안 제2조)
 - 동에 대한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없음

4. 토론요지

- 없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-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254호
의결년월일	97. 5. 7. (제53회)

제출년월일 : 1997. 4. 22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1. 개정이유

- 시·구 감사기능의 일원화를 위하여 구청의 감사계를 폐지하고 감사담당관실에 2계 신설과 음식물쓰레기처리 등 업무량의 증가로 청소과에 1계를 각각 신설하고자 96. 12. 26일 도에 기구·정원을 승인 신청하여
- 경기도 자치 12200-1003(97.4.11.)호로 기구정원이 승인되어 구청장에게 위임된 동에 대한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업무를 시로 회수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

2. 주요골자

- 구청장의 감사관련 업무 일부 회수(안 제2조)
 - 동에 대한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

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별표) 1. 부천시사무의구위임사항 중 감사담당관실의 위임사무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부천시사무의구위임사항

실과별	위임사무명	근거법적용
감사담당관실	1. 구 및 동에 대한 기강감사(수시) 2. 구 및 동 공무원의 훈계 및 경고 처분	부천시자체감사규칙 제4조제3항 내무부훈령 제381호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중인 감사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개 정 안		
실과별	위임사무명	근거법적용	실과별	위임사무명	근거법적용
감사 담당 관실	1. 동에 대한 제반감사 (수시) 2. (생략)	내무부행정감사규 칙 제2조, 제3조 (생략)	……	1. 구 및 동에 대한 기 강 감사(수시) 2.(현행과 같음)	부천시자체감사규 칙 제4조제3항 (현행과 같음)